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4 선고 2020가단5047881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A 주식회사

피 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총청

담당변호사 조선란

변 론 종 결 2021. 9. 30.

판 결 선 고 2021. 11. 4.

주 문

1.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15분의 2 지분에 관하여 2017. 2. 7. 체결된 상속재산협의분할계약을 5,617,172원의 한도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617,172원과 이에 대한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의 C에 대한 채권

- 1) C은 2001. 6. 19. 주식회사 D과의 사이에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대출금을 지급받았으나, 그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다.
 - 2) 주식회사 D은 2002. 10. 28.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한국자산관리공사는 2012. 9. 18. 원고에게 C에 대한 위 대출원리금 채권을 순차로 각 양도하였다.
 - 3) 원고는 C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차전47601호 양수금 청구를 하였고, 위 법원은 C은 원고에게 4,691,303원과 그 중 1,079,964원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 연 17%,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발하였고, 위 명령은 2016. 4. 6. 확정되었다.
- 위와 같이 확정된 지급명령에 따라 C이 원고에게 지급해야 하는 채무액은 2021. 9. 13. 원고의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접수일 현재 5,617,172원이다.

나.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

-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였던 E은 2016. 8. 25. 사망하였고(이하 E을 '망인'이라고 한다), 망인의 상속인들로는 배우자인 F와 자녀들인 G, 피고, H, C I, J 등 합계 7인이 있다.
- 2) 위 7인의 공동상속인들은 2017. 2. 7.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나머지 공동상속인들은 그 상속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피고는 2017. 2. 17.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C의 재정 상태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약 20만 원 상당의 1998년식 카니발 차량을 소유하고 있었을 뿐이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상속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 등

이 사건 부동산에는 망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 2018. 9.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91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마쳐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금융결제원, K기관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충주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회신결과,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앞서 C에 대하여 양수금 채권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위 채권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대한 사해행위 취소를 구할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및 사해의사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C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에 적극재산이 거의 없어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는데, 이 상태에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자신의 상속분인 2/15 지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였다. 이는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어야 하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채무자의 권리를 소멸시키는 행위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채무자인 C의

사해의사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다. 피고의 선의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의 채무내역에 대해 알지 못하였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권자취소권의 주관적 요건으로서의 사해의사는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에 의하여 그 재산이 감소되어 채권의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기거나 이미 부족상태에 있는 공동담보가 더욱 부족하게 됨으로써 채권자의 채권을 완전하게 만족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것을 의미하고, 채무자의 사해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바,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정 및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그와 같은 악의의 추정을 뒤집고 피고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선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라. 사해행위의 취소 및 가액배상

1)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지게 되고,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바, 여기에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라 함은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그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8. 5. 15. 선고 97다58316 판결 참조), 사해행위 후 그 목적물에 관하여 제3자가 저당권이나 지상권 등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수익자가 목적물을 저당권 등의 제한이 없는 상태로 회복하여 이전하여 줄 수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는 수익자를 상대로 원물반환 대신에 그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도 있다(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7139 판결 참조). 이 경우 가액배상에서 가액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산정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이 사건 부동산에는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전에 망인을 채무자로 하는 채권최고액 48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으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이후인 2018. 9. 27. 위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었고, 같은 날 채권최고액을 910,000,000원, 채무자를 피고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새로 마쳐진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가액 상당의 배상을 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한편 사해행위의 일부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그 취소 및 가액배상은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었던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 중 C의 상속지분 2/15과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중 적은 금액을 한도로 이루어져야 한다.

살피건대, 원고의 C에 대한 양수금 채권액이 2021. 9. 13. 현재 5,617,172원인데 비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8. 9. 27. 마쳐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권최고액이 91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최소한 위 채권최고액 또는 이를 상회할 것으로 추정되어서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5,617,172원은 C의 상속지분인 2/15보다 적은 금액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이는 원고의 피보전채권액 5,617,172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되어야 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 중 2/15 지분에 대하여 체결된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617,172원의 범위 내에서 이를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가액배상으로 5,617,172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한다.

판사 유영일

별지목록

부동산의 표시

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답 885 m'
2.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답 109 m'
3.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답 482 m'
4.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입야 573 m'
5.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전 140 m'
6.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답 107 m'
7.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답 150 m'
8.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잡종지 433 m'
9.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 34 m'
1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 178 m'
11.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대 58 m'
12. 위 9,10,11 지상		
[도로명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철근콘크리트슬래브지붕 4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		
1층	34.92 m'	
2층	34.92 m'	
3층	34.92 m'	
1층-4층	330.00 m'	

